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10. 2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35호로 2023년 10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청년들에 대하여 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청년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나. 예산조치: 2024년도 예산 반영 예정(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 8. 31. ~ 9. 20./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4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에서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해 어학능력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과 같은 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검토 결과

- 본 안건은 청년들에 대하여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년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는 4개¹⁾의 자치구가 있으며, 우리 구는 해당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1인당 10만원을 상한으로 추계하여 지원할 예정임.
- 한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개정안에서 신설하고 있는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관한

1) 「청년 기본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2개 자치구): 양천구, 강서구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2개 자치구): 광진구, 마포구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된 사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